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93 발의연월일: 2021. 8. 24.

발 의 자:서영석・김성주・문진석

이용빈 · 이용선 · 이정문

인재근 · 정태호 · 최종윤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의 종합적인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국민의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2018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8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는 24만 3,837명으로 전년에 비해 8,290명 증가했고, 암환자의 증가 추세는 21만 8천여 명을 기록했던 2015년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암환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내 포하고 있기에 암환자의 발생 감소와 암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 및 암생존자의 문제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 고, 암생존자 일·치료병행지원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12조의3).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예방과 진료 및 연구"를 "예방, 진료, 연구 및 암생존자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 노동권 보장, 사회복귀지원 등 경제활동 촉진(이하"암생존자의 경제활동 촉진"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암생존자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암생존자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5. 암생존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암생존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귀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암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를 "암생존자의"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3(암생존자 일·치료병행지원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의 경력단절 극복, 복직 및 취업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암생존자 일·치료병행지원사업"이라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암생존자의 휴직, 복직 및 취업에 대한 상담ㆍ교육
 - 2. 암생존자의 경력단절 극복, 복직 및 취업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3. 암생존자의 취업 중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 4. 그 밖에 암생존자의 일자리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의 경력단절 극복, 복직, 취업 및 건 강관리 등을 위하여 암생존자 일·치료병행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 을 설립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암생존자 일·치료병행지원사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암생존자 일·치료병행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 니한 경우
-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암생존자 일·치료병행지원사업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암생존자 일·치료병행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제48조 중 "제17조제3항"을 "제12조의3제3항,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암의 제1조(목적)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 예방, 진료, 연구 및 암생존자의 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 | 경제활동 촉진-----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 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②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 생존자(암환자 중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 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노동권 보장, 사회복귀 지원 등 경제활동 촉진(이하 "암생존자의 경제활동 촉진"이 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마련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3. (생략) <신 설>

<신 설>

4. (생략)

③ ~ ⑤ (생 략)

략)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 는 위촉한다.

1. • 2. (생략)

<신 설>

\bigcirc		(2)	(혂행과	간은)
$\langle \mathbf{I} \rangle$	-	(4)	(37 38 24	年日/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 민이 암생존자의 부정적 인식 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현행과 같음)

(2)	

- 1. ~ 3. (현행과 같음)
- 4. 암생존자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5. 암생존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 6. (현행 제4호와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2	

- 1. · 2. (현행과 같음)
- 3. 암생존자의 건강증진 및 사 회복귀와 관련한 경험이 풍 부한 사람

③ • ④ (생 략)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암생존자</u> (암환자 중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말기 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 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지(支 持) 사업(이하 "암생존자통합지 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 야 한다.
-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3	• ④ (현행과 같음)
제122	C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1	<u>암생존자</u>
의-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2조의3(암생존자 일·치료병 행지원사업)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암생존자의 경력단절 극 복, 복직 및 취업과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암생존자 일· 치료병행지원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암생존자의 휴직, 복직 및 취업에 대한 상담·교육

- 2. 암생존자의 경력단절 극복,복직 및 취업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3. 암생존자의 취업 중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 4. 그 밖에 암생존자의 일자리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의 경력단절 극복, 복직, 취업및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암생존자 일·치료병행지원사업을수행할 기관을 설립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암생존자 일·치료병행지원사업기관으로 지정할수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 저 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7. (생 략)
<<u>신 설></u>

8. • 9. (생략)

제4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저 제12조의2제3항, <u>제17조제3항</u>, 제18조의2제2항 또는 제19조제 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암생존자
일·치료병행지원사업을 수행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암생
존자 일 · 치료병행지원사업기
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제3항
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u>다.</u> 레4C코(비 이 코)이)
세46조(비용 지원)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암생존자 일·치료병행지
원사업에 드는 비용
8. • 9. (현행과 같음)
세48조(청문)
제12조의3제3
항, 제17조제3항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